

2003.1.20

檢 討 報 告 書
(第117回 臨時會)

達 城 郡 議 會
專 門 委 員 文 乙 姬

목 차

- 대구광역시 달성군새감면조례증
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노인복지시설,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맞추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근거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3) 주요내용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중 시설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하던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함. (안 조례 제5조)
-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외에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추가함. (안 조례 제11조제1항)

-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함.
(안 조례 제15조)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기한을 연장하여 『2005년 12월 31일』로 함. (안 조례 제19조제1항)

4.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세감면 규정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확대코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임.

- 제5조 개정 내용중 “유료노인복지시설 ” 을 “노인복지시설” 로 함으로서 세감면을 확대함.

- 제11조 개정 내용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에 규정한 가공업자를 추가함.

- 제15조 개정 내용은 현행 법조항의 삭제(2002. 3. 30)로 인하여 법 조항 변경함. (제6조→제12조)

- 제19조 개정 내용은 세감면 기한을 연장함.
(2002. 12. 31→2005. 12. 31)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지원자립작업장
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 2003. 1.

2. 제출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사유

- 장애인에게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3) 주요내용

- 군 장애인재활자립장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장애인자립작업장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문화(안 제4조)
- 장애인자립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에 관한 규정 마련(안 7조)
- 장애인자립작업장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10조)

4. 검토보고

- 본 조례는 장애인의 자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임.
- 제1조~제3조 : 목적, 위치, 시설종류 및 업종을 규정함.
- 제4조(운영의 위탁) :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등에 위탁운영
 -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할 수 있음
- 제5조(위탁계약) : 서면 계약 체결
- 제6조(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기간연장 갱신 가능함
-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 고용대상 장애인에 관한 규정 마련
 - 대구광역시내 6개월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 할 수 있는 자
 - 비장애인은 전체작업인원수의 10분의 3 범위내
- 제8조(직원) : 작업장 책임자 및 직원 약간 채용
- 제9조(급여)
 - 법정최저 임금액 이상 지급(월 514, 150원), 별도 수당 지급가능
 - 비장애인 및 직원급여는 계약에 의함
- 제10조(수익금의사용) : 작업장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정함
 - 작업장 수익금은 고용장애인, 비장애인, 직원 급여 및 운영유지비 사용
 - 위 용도 사용후 남은 수익금은 고용장애인 복지증진과 시설 재투자에 사용

-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 작업장 시설 및 인원 확보
 - 작업장재산의 운영목적외 사용불가
 -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및 보존 책임을 짐
 -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짐
 - 조례 및 규정에 위반하면 안됨

- 제12조 (승인) : 사전 군수 승인사항
 -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
 - 급여에 관한 사항
 -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 수익금 사용

- 제13조 (보고) : 군수에게 분기별 보고사항
 - 회계운영
 - 작업장 운영

- 제14조 (감독)
 - 작업장 시설·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운영상황, 장부 기타서류 조사, 검사

- 제15조 (위탁의 취소)
 - 수탁자의 의무 위반시
 - 감독불응, 시정조치 미이행시
 -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위탁조건 위반시
 -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 본 조례제정은 경기도 용인시의 조례를 인용하였음
- 본 조례제정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통한 자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 하나,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기관에서 작업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기술습득 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수지 경영을 하여야 하는바,

교육 및 전문기술 습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장 운영을 하면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가 적을 것으로 예측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의 폭이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투자한 만큼 실수익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인건비 및 시설투자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